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834
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15일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김춘례 의원(찬성자 15명)
- 나. 발의일자 : 2020년 8월 12일
- 다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1일
- 라. 상정결과 :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
관광위원회 (2020년 9월 3일,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김춘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국공립 외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·감독 및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.
- 또한 지역 문화시설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·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함(안 제3조제2항).
-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, 자치구, 박물관 및 미술관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함(안 제3조제3항).
- 시장은 시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.(안 제3조제4항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정욱)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 외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 관리·감독 및 지원을 하여 학생들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리고, 지역문화시설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2019년 기준 서울시 내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은 128개, 미술관은 45개로 미술관보다 박물관이 약 3배 많으며, 박물관과 미술관 모두 국공립보다 사립기관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, 지난 5년간('14년~'19년) 박물관·미술관은 약 14.6% 증가(151개→173개)했음.

<서울시 박물관·미술관 현황>

연도별	합계	박물관				미술관			
		계	국공립	사립	대학	계	국공립	사립	대학
2019년	173	128	30	70	28	45	5	35	5
2014년	151	116	26	66	24	35	3	28	4

(2019,2014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, 문화체육관광부)

- ‘2019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(문화체육관광부)’에 따르면 박물관 한 곳 당 평균 직원은 21.2명, 학예직원은 7.96명, 소장자료는 31,362점, 연 관람인원은 162,102명이며,

미술관 한 곳 당 평균 직원은 10.6명, 학예직원은 3.91명, 소장자료는 961점, 연 관람인원은 115,041명으로 박물관의 보유 자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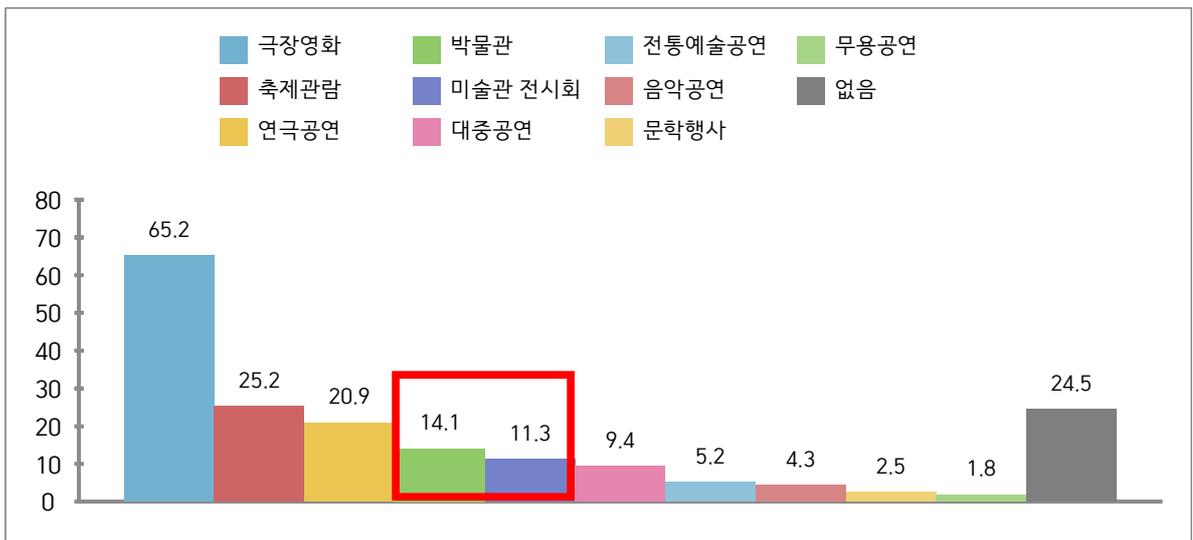
<서울시 박물관·미술관 보유자원현황>



(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)

- ‘2018년 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(서울문화재단)’에 따르면 문화예술관람에 대한 관심은 52.7%로 여행 나들이 다음으로 높은 편이나 1년 1회 이상 문화예술관람 경험은 박물관은 14.1%, 미술관은 11.3%인 것으로 확인됐음.

<최근 1년 문화예술관람률>



- 현행 조례 제3조는 단순히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개정조례안에서는 ① 관리가 어려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②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, ③ 시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박물관·미술관의 육성·진흥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임.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 시책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바,

서울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, 2020년의 경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한 4개 사업에 10억 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제2항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2020년 서울시 사립 박물관·미술관 사업 현황>

연번	추진 사업	예산	내용
합계		1,070백만원	
1	문화사업	580백만원	기획인건비, 작가지원료,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, 축제, 홍보 사업 등 지원
2	시설개선	350백만원	노후된 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/13개기관
3	인력지원	120백만원	학예보조 인력 인건비/자부담 30만원/7개기관
4	홈페이지	20백만원	홈페이지 유지보수, 홍보, 정보 업데이트

- ‘서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(2018.9월)’에 따르면 서울시는 문화적 기회불평등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아동·청소년 예술교육센터, 도서관 등을 건립 및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,

문화본부 소관 박물관 14개소, 미술관 10개소 외에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('21.12월), 서울사진미술관('23.4월), 서서울미술관('23.8월), 삼청각('21.12월), 자연사박물관('20.12월) 등을 건립 또는 리모델링 중이므로 안 제3조제3항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
한편, 교육청, 자치구 관련 법인·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시설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인, 장애인, 청소년 등 대상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<문화본부 소관 박물관·미술관 현황>

연번	박물관	개관일	미술관	개관일
1	돈의문박물관마을	'17.9월	서울시립미술관	'88년
2	서울우리소리박물관	'19.11월	남서울미술관	'04년
3	한성백제박물관	'12.4월	북서울미술관	'12년
4	서울역사박물관	'02.5월	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	'06년
5	경교장	'13.3월	SeMA 벙커	'16년
6	백인제가옥	'15.11월	SeMA 창고	'16년
7	돈의문전시관	'18.4월	백남준기념관	'17년
8	공평도시유적전시관	'18.9월	세종미술관 1,2관	'78년
9	경희궁	-	광화랑	'05.2월
10	한양도성박물관	'14.7월	세종·충무공이야기	'09년
11	동대문역사관	'09.10월	/	
12	동대문운동장기념관	'09.10월		
13	청계천박물관	'06.1월		
14	서울생활사박물관	'19.9월		

- 서울시는 2015년부터 '서울 박물관·미술관 홈페이지'를 운영하고 있으며, 홈페이지상에서 기존 등록 박물관·미술관 전시 및 행사 뿐 아니라 신규 등록 박물관·미술관의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나, 아래 그림에서처럼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고 공립, 사립을 별도로 클릭하면 목록이 없는 등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만 되어 있을 뿐 현행화가 되지 않으므로 안 제3조제4항 신설을 기회로

박물관·미술관 홈페이지 관리·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<서울 박물관·미술관 홈페이지 현황>

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춘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3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발 의 자 : 김춘례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태호, 최영주, 경만선,
오한아, 노승재, 안광석,
유정희, 송아량, 최정순,
박기재, 이은주, 이승미,
김경영, 정진철, 김정환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국공립 외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·감독 및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.
- 또한 지역 문화시설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·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

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함.(안 제3조제2항)

나.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, 자치구, 박물관 및 미술관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함.(안 제3조제3항)

다. 시장은 시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.(안 제3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조(박물관·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는 설립·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역 문화시설로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, 자치구, 박물관 및 미술관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시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박물관·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박물관·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는 설립·운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역 문화시설로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, 자치구, 박물관 및 미술관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시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</p>